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제38조의3)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시행을 위한 검사의 대상과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4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06. 28. ~ 2024. 07.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마약류 검사의 방법 등)

- ①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법의 적용을 받는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되,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 ② 마약류 검사는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세부 일정은 군보건의료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약류 검사 방법은 소변검사로 한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3 (마약류 검사의 방법 등) ① <u>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법의 적용을 받는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되,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한다.</u> ② <u>마약류 검사는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세부 일정은 군보건의료기관과 사전 협의한다.</u> ③ <u>제2항에 따라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마약류 검사 방법은 소변검사로 한다.</u> ④ <u>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보건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41